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362
----------	------

제출년월일 : 2013. 2. 22.
제출자 : 안산시장

제안이유

- 조례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공설장사시설의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공설장사시설을 신청하고자 할 때 신청기간 신설(안 제7조).
- 나. 장사시설 연장신청 시 연고자의 기준 완화(안 제8조)
- 다. 장사시설(봉안시설) 내 설치기준 마련(안 제9조)
- 라.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기준 세부화 (안 제12조).
- 마.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하여 조문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5조)

개정조례안 : “불임”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3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있음

-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대상 중 수급자인 경우 당초 ‘연고자’에서 ‘망인 또는 연고자’로 확대 적용(반영)
- 입법예고 : 2013. 1. 22. ~ 2. 12.(20일간)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를 “제23조에 따라” 로 한다.

제2조의 “정의는” 을 “뜻은” 이라 하고, 제1호 및 제2호 중 “라 함은” 을 “란” 으로 하며, 제3호에서 제7호까지의 “이라 함은” 을 “이란” 으로 하고,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연고자” 란 「장사 등에 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16호를 준용한다.

9. “공설장사시설이란 안산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유지·관리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제4조의 “시장” 을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상주(장남 또는 장녀)” 를 “망인의 연고자 중 상주(장남 또는 장남이 없는 경우 장녀)” 로 하고 제2항의 “두고” 를 “하고” 로 한다.

제6조제1항의 “범위 안에서” 를 “범위에서” 로하고 제2항의 “생존하고” 를 “신청일 현재 생존하고” 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사용기간” 을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으로 하고, 제1항 중 “ 「장사등에 관한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를 “법” 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망인이 사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제1항의 “의한” 을 “따른” 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⑤ 연장허가 시 연고자 중 배우자, 자녀, 부모(다만 망인이 미혼이거나, 자녀와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연고자) 중 1인이라도 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제2항 중 “같은법 시행령” 을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라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설장사시설 중 봉안시설은 시장이 정한 형태의 일련번호와 망인의 성명을 기재한 명패외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⑤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허가 받은 자는 타인에게 양도·매매·임대할 수 없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분묘에”를 “분묘 및 봉안시설에”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망인 또는 연고자(연고자 중 최우선 순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의료·자활·교육특례자는 제외한다)

2.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인 경우

3. 그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식품위생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담당·팀장 직위·성명	공중위생담당 안소영
	담당자 성명·전화	오인식 (행정 283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안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제23조에</u>
제2조(정의)(생략) 1. “공설공원묘지” 라 함은 개선된 분묘형태로 매장 또는 봉안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2. “공설묘지” 라 함은 과거에 설치된 공동묘지 형태의 단지조성을 하지 않은 구역의 묘지를 말하며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아 공설공원묘지 형태로 재조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묘지를 말한다. 3. “무연분묘묘역” 이라 함은 관내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된 무연분묘의 유골을 화장하여 매장하는 묘역을 말한다. 4. “장사시설” 이라 함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5. “봉안시설” 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6. “산골시설” 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을 말한다. 7. “사설봉안시설” 이라 함은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 등이 설치·관리하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u>란</u> 2. <u>란</u> 3. <u>이란</u> 4. <u>이란</u> 5. <u>이란</u> 6. <u>이란</u> 7. <u>이란</u> 8. “연고자”란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16호를 준용한다. 9. “공설장사시설”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운영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u>시장의 허가</u> 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u>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① (생략)</p> <p>1. 사망일 현재 망인 또는 상주(장남 또는 장녀). 다만, 망인이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연고자)가 시 관내에 90일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p> <p>2.~7.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고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 중 산골시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6조(공설장사시설의 면적제한 등) ① 공설 공원묘지 및 공설묘지 내에 설치하는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6.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초과 사용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합장분묘 또는 봉안시설의 부부단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이어야 한다.</p> <p>제7조(사용기간)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및 연장기간과 그 연장기간의 단축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생략)</p> <p>〈신설〉</p>	<p>제5조(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① (현행과 같음)</p> <p>1. 망인의 연고자 중 상주(장남 또는 장남이 없는 경우 장녀)</p> <p>..... 주민등록을 하고.....</p> <p>2.~7. (현행과 같음)</p> <p>②</p> <p>..... 하고.....</p> <p>.....</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공설장사시설의 면적제한 등)①</p> <p>.....</p> <p>.....</p> <p>..... 범위에서.....</p> <p>....</p> <p>②</p> <p>..... 신청일</p> <p>현재 생존하고.....</p> <p>제7조(신청기간 및 사용기간)①</p> <p>..... 법</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공설장사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망인이 사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8조(사용료 및 관리비)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골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p> <p>②~④ (생략)</p> <p>〈신설〉</p>
	<p>제8조(사용료 및 관리비)①</p> <p>..... 따른</p> <p>.....</p> <p>.....</p> <p>②~④ (현행과 같음)</p> <p>⑤ 연장허가 시 연고자 중 배우자, 자녀, 부모(다만, 망인이 미혼이거나 자녀와 부모가 없는 경우 최근친 연고자) 중 1인이라도 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시 관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p>

